

제2702호
2020. 1. 8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
전화: 3396-495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20-155호 :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요금 변경 고시 2
 제2020-3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
 제2020-4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
 제2020-5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5

● 공 고

제2020-984호 :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6
 제2020-3호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9
 제2020-4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(안) 10
 제2020-15호 :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 1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155호

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요금 변경 고시

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방문객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이용 증대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1조의 3항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3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주차장 운영개요

- 주차장명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
- 규 모 : 지하 1~4층 216면

나. 주차장 운영방법

- 운영시간 : 오전 6시 ~ 오후 11시
- 주차요금

(단위 : 원)

1회 주차			정기주차	변경 시행일
30분	초과 10분당	전 일	1개월	
2,000	600	20,000	130,000	2020. 1. 3.

※적용근거 : 『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제31조 3항 및 별표5(주차 이용요금) 1의 라항

다. 문의처

- 중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(☎ 02-3396-4622)
-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행정팀 (☎ 02-3147-2401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3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36-1번지 외 1필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14	2020. 1. 8.	을지로19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	을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4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5길 34-5	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36-1	2020. 1. 8	건물 철거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14	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36-1	2020. 1. 8	건물 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5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0호(2015.7.30.)로 사업시행인가된 우리구 산림동 275-3번지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5-3번지 일대(2,732.3㎡)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더센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. 216호 (역삼동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(변경)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7월 30일
7. 변경사유 : 기존 사업시행기간 만료(2020.1.30.)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
8. 변경내용 : 사업기간 -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9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. 끝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984호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하고 건물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등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아 래 -

- 1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0. 1. 3. ~ 2020. 1. 18. (15일간)
- 2. 공고장소 : 서울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- 3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천야**회사 외 10건
	주 소 (대장상주소)	미기재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 “ 불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현황에 의함 ”	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

- 4. 유의 사항
 - 가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현황

연번	부동산표시 내역	건축물대장 내용				건물소유자	비고
		연면적(m ²)	층수	용도	구조		
1	필동1가 23	87.04	지상1층	주택	목조	천야**회사	직권말소
2	필동1가 23	164.1	지상2층	주택	목조	천야**회사	직권말소
3	필동1가 23	85.95	지상1층	주택	목조	천야**회사	직권말소
4	필동1가 23	79.34	지상1층	주택	목조	천야**회사	직권말소
5	필동1가 23	158.68	지상2층	주택	목조	천야**회사	직권말소
6	장충동2가 192-3	442.98	지상2층	주택	목조	조선*****통 제(주)	직권말소
7	장충동2가 192-3	105.79	지상2층	주택	목조	조선*****통 제(주)	직권말소
8	충무로3가 38-1	627.08	지상2층	점포	목조	천야**회사	직권말소
9	충무로3가 38-1	267.2	지하1층/지 상2층	점포	목조	천야**회사	직권말소
10	장충동2가 193-18	244.63	지상2층	주택	목조	조선*****통 제(주)	직권말소
11	장충동2가 193-18	102.48	지상1층	주택	연와조,철근 콘크리트조	조선*****통 제(주)	직권말소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의견제출인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3호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)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**공고의 명칭** :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
2. **공 고 기 간** : 2020.01.08 ~ 2020.01.23.
3. **공 고 대 상**
 - 자동차등록번호 : 49너39** 외 3건
 - 소 유 자 명 : 이** 외 3건
 - 운행정지 명령일자 : 2019.12.01.~2019.12.31.
 - 운행정지 사유 : 소유자 요청에 의거

4. **공 고 내 용**
 -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 -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 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(02-3396-624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운행정지 자동차 현황

연번	운행정지 상태	자동차 등록번호	소유자명	소유자등록번호	사용본거지주소
1	등록	49너39**	이**	560525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7길 **, (주교동)
2	등록	64가02**	조**	810916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37길 **(신당동)
3	등록	01버57**	주-풍곡***	11011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**, **빌딩 ***호(신당동)
4	등록	08소22**	한**	710913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 **, ***호(신당동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4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39호(2019. 1. 1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·명칭 및 시행기간

-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사업의 기간 :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솔라고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규풍
- 주 소 :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곶이길 92-234

3. 공람요지

- 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2-1 일대
- 다. 시행면적 : 3,621.40㎡
- 라. 건축계획 : 지하5층/지상14층, 연면적 32,036.56㎡, 생활숙박시설
-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733.20㎡
- 바. 변경내용
 - 구역면적 변경 : 촉진계획 변경(구역 일부 통합)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
 - 변경 전 : 구역면적 3,507.10㎡, 대지면적 2,819.30㎡, 도로 687.80㎡
 - 변경 전 : 구역면적 3,621.40㎡, 대지면적 2,888.20㎡, 도로 733.20㎡

- 주용도 변경 : 오피스텔 392 / 생활형숙박시설 192실 → 생활형숙박시설 559실
- 건축규모 변경
 - 변경 전 : 연면적 32,369.88㎡, 지하6/지상14층, 높이 44.60m
 - 변경 후 : 연면적 32,036.56㎡, 지하5/지상14층, 높이 46.87m

4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02-3396-5754)

5. 공람기간 : 2020. 01. 08. ~ 2020. 01. 22.(14일간)

6. 관계도서 : 세운 6-2-24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또는 이메일(jihoonseon@junggu.seoul.kr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 램 의 견 서

사 업 명	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		
공 램 기 간	2020년 01월 08일 ~ 2020년 01월 22일			
대상물건지	건물 :			
	토지 :			
의견제출인	성 명		(인)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	전 화 번 호
내 용				

2020. . 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-15호

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

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
2020년 1월 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 리 기 간 : 2020. 1. 7.(화) ~ 3. 20.(금)
2. 신 고 장 소 및 문 의 처 : 거주지 동주민센터
3. 정 리 내 용
 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
 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
 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
 -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
 -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
4. 참 고 사 항
 -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.
 -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.